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2차 교육위원회)  
2018. 3. 27 (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최광주

#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숙 애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개정이유

독서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서점 등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명 변경

- 현행: 「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」

- 변경: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」

○ 조례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문 수정(안 제1조)

- 지적능력향상, 건전한정서 함양, 독서교육습관화

→ 독서능력향상, 지적·정서적 발달, 자기주도적 학습역량강화

○ 용어정의에 지역서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조)

-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○ 협력체구축에 지역 서점 등을 추가하여 조문 수정(안 제9조)

○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10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으로,
- 학교 독서교육이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, 이를 통하여 지역서점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또한 조례명을 「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」로 변경한 것은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 개정의 목적에 따라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도모되기 위해서는 지역서점과 연계한 학교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독서교육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.